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관장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mRNA백신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은 감축하고 재난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과 질병대응센터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9.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3호 중 “국제보건규약(IHR) 사무국 운영 및 국가연락”을 “국제보건규칙(IHR) 국가연락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보건규칙(IHR) 국가 IHR 당국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단서 중 “1명, 행정서기보”를 “1명,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로,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8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2조(mRNA백신개발지원과) ① 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5 중 총계 “474”를 “476”으로,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를 삭제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6 다음에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4”를 삭제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 다음에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

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 다음에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3”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478”을 “480”으로, 일반직 계 “477”을 “479”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6”를 삭제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6 다음에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4”를 삭제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1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 다음에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를 신설한다.

별표 6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 다음에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를 삭제,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

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0”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0”를 삭제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 다음에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0”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0”를 삭제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3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56”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56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20”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20 다음에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70”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

주사보 156”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0”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5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9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2조의제2항 관련)

1. mRNA백신개발지원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보건연구관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국제보건규약(IHR) 사무국 운영 및 국가연락</u> 업무에 관한 사항	13. <u>국제보건규칙(IHR) 국가연락담당관</u> -----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 ② (생략)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u>국제보건규칙(IHR) 국가 IHR 당국 업무에 관한 사항</u>
13. (생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 1명,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2조(mRNA백신개발지원과)

① 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

보건복지부령 제75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9급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표 12와 같다.</u> 보건복지부령 제75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 <u>9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4</u>	• <u>476</u>	+2
일반직 계	• • <u>473</u>	• • <u>475</u>	+2
• •	• •	• •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신 설>	<u>57</u>	+57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56</u>	<삭 제>	-56
•	•	•	

·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u>	· <신 설>	· <u>55</u>	+55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u>	54	<삭 제>	-54
·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 <신 설>	· <u>57</u>	+57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신 설>	<u>23</u>	+23
<u>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신 설>	<u>6</u>	+6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57</u>	<u><삭 제></u>	-57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23</u>	<u><삭 제></u>	-23
<u>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6</u>	<u><삭 제></u>	-6
·	·	·	
·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8</u>	<u>480</u>	+2
•	•	•	
•	•	•	
일반직 계	<u>477</u>	<u>479</u>	+2
•	•	•	
•	•	•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57</u>	+57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56</u>	<u><삭 제></u>	-56
•	•	•	
•	•	•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u>	<신 설>	55	+55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u>	54	<삭 제>	-54
.	.	.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신 설>	57	+57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신 설>	23	+23
<u>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u>	<신 설>	1	+1
<u>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신 설>	6	+6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57</u>	<u><삭 제></u>	-57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23</u>	<u><삭 제></u>	-23
<u>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6</u>	<u><삭 제></u>	-6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 · <신 설> 30 · · <삭 제> 30 · · <신 설>	· · 30 <삭 제> 100	+30 -30 +100

<u>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u>100</u>	<u><삭 제></u>	-100
.	.	.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u><신 설></u>	<u>156</u>	+156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서기 · 의료기술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220</u>	+220
<u>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70</u>	+70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156</u>	<u><삭 제></u>	-156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서기 · 의료기술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220</u>	<u><삭 제></u>	-220

<u>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70</u>	<u><삭 제></u>	-70
·	·	·	
·	·	·	

[별표 1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2조의제2항 관련)

1. mRNA백신개발지원과(준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보건연구관	1